

#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제정 2002. 9.25

개정 2004. 4.20

개정 2005. 3. 2

개정 2007. 3.12

개정 2008. 3. 3

개정 2009. 2.20

개정 2010. 4.20

개정 2017. 3.14

개정 2024. 1. 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90조 및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각 투자집합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 종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령 제99조 제2항 제5호 자목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 요건을 갖춘 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투자일임재산 중, 해당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로써,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이 체결된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 및 방법은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에 따른다.

**제4조(행사방향)** ①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2.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3. 경영의 투명성 확보
4.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5.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

② 제1항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사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2023. 10. 25. 개정)을 참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포함). 단,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 절차 없이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

**제5조(이해 상충)**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시 소유지배 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해 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운영한다.

1. 의결권 담당 부서 임직원은 회사 및 계열사의 거래·계약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 상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의 이해 상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중립적 투표)**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중립적 투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회사가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행사방법

**제9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4장 행사절차

**제12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결정)** ① 의결권 분석담당자는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운용담당임원은 이를 기초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②의안에 대한 행사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거나 행사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그리고 외부 자문기관 이용 시, 외부자문기관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결권 분석담당자 및 운용역의 협의를 거쳐 운용담당임원이 최종 결정한다.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기록으로 보관한다.

③ 의결권 분석 담당자 및 운용담당임원은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용담당임원은 본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및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한 중요한 사안의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할 경우 'ESG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ESG위원회 운영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회사는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의결권 자문기관,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의결권 행사 방향은 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 제5장 공시 등

**제15조(공시)**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제8항 및 법 제9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사실과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미행사사실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법 제87조\_제9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가 그 의결권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이 지침을 말한다)

2. 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증권예탁증권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최소 년 1회 게재한다. 단 행사내역의 공개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주주가치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행사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기록유지)**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